

의안번호	2207108
의 퇴 인	김종양의원
회 답 일	2024. 12. 31.
추 계 번호	24D6298

재해영향평가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억 8,000만원, 2030년 6억 1,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6억 2,000만원(연평균 7억 2,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안 제43조)	1,280	552	576	594	618	3,620	724

-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추계기간 첫해인 2026년에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2027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재해영향평가협의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8조(전문기관의 설립·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저감대책업무의 전문성 확보,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조사,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재량규정
3	안 제21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2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27조(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이행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의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행실태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38조(재해영향평가사)	재해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별도로 위탁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43조(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의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포함한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이하 “운영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재해영향평가협의회)	-	· 기 실시사업 재해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중대한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실시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621건 협의 실시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8조(전문기관의 설립·운영)	X	· 기존 사업의 확대 규모 및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여 예측 불가능 재해영향평가 관련 조사,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기존 사업의 확대 여부, 확대 규모 및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전문기관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원 규모, 신규 채용 인원 및 직급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불가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관련 지원 및 연구 업무를 국립재난연구원(전담인력 3명)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음
3	안 제21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 기 실시사업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미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위하여 100명(당연직 2명, 위촉직 98명)의 심의위원 인력 자원을 운영 중이고 연간당 6~10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심의 실시
4	안 제2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	· 기 실시사업 현행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가 재해영향평가 분야의 교육을 실시 중이고 교육대상자들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5	안 제27조(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이행실태 점검)	—	· 기 실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점검은 이미 실시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780개 사업장에 대하여 1,859건의 이행 점검 실시
6	안 제38조(재해영향평가사)	X	· 구체적인 계획 및 자료 부재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제도 설계 등을 위한 정책용역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시험 응시자의 수수료 납부에 따른 수입 등으로 제정안에 따른 재정변화가 예상되나 구체적인 계획과 시험 응시자 수, 응시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불가능
7	안 제43조(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O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43조)에 한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제정안은 현행 재해영향평가제도(「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 실시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
-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구축비용)** 추계기간 첫해인 2026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 제정안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 구축비용은 2026년 12억 8,000만원으로 예상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중앙시스템 서버 구입, 빅데이터 스토리지 구입 등에 비용 소모
 - (중앙시스템) 2U서버 10개, 2023년 기준 단가 3,000만원
 - (빅데이터 스토리지) NAS 스토리지 1PB 3ro, 2023년 기준 단가 3억원
 - 본 추계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2023년 기준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제정안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 구축비용 산출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4.1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5.1%	3.6%	2.5%	2.1%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5.0%	4.9%	2.5%	3.2%	3.6%	3.9%	3.8%	3.8%

[표 2]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 구축비용 추계: 2026년

구분	설명	최소 사양	수량 (A, 개)	단가 (B, 백만원)	구축비용 (A×B, 백만원)
중앙 시스템	●재해영향평가 중앙시스템용 서버 ●WEP, WAS, DB 서버 등 ●이중화 필수	2U서버	10	32	320
빅데이터 스토리지	●연간 4,000건의 재해영향평가 관련 데이터 저장소 ●이미지, 폴리곤을 포함한 재해영향평가 문서, 데이터 전체 ●연간 약 600TB 발생× 5년 보관 = 3PB	NAS 스토리지 1PB	3	320	960
합계					1,280

자료: 행정안전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운영비용) 2026년에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2027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 제정안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 운영비용은 2027년 5억 5,200만원, 2030년 6억 1,800만원으로 예상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Help Desk, 데이터입력 등을 위한 상주 운영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 (시스템 Help Desk) 3년 이상 경력의 중급자 2명, 2023년 기준 연봉 8,000만원²⁾
 - (데이터 입력원) 3년 이상 경력의 중급자 4명, 2023년 기준 연봉 8,000만원
- 본 추계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2023년 기준 연봉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명목임금상승을 곱하여 제정안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 운영비용 산출
 - 상주 운영인력이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2)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

[표 3]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 운영비용 추계: 2027~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설명	2027	2028	2029	2030
시스템 Help Desk	•시스템 운영을 위한 콜센터 (Help Desk) 인원 •2인 상주	184	192	198	206
데이터 입력원	•연간 4,000건의 재평 관련 데이터 입력 •연 근무일 248일 기준, 일 16건의 재해영향평가 데이터 입력 필요 •4건/인/일 = 총 4명의 데이터 입력원 상주	368	384	396	412
합계		552	576	594	618

자료: 행정안전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억 8,000만원, 2030년 6억 1,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6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구축비용	1,280	—	—	—	—	1,280
운영비용	—	552	576	594	618	2,340
합계	1,280	552	576	594	618	3,6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